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과 제1조(목적)중 "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"를 "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제2호외 제5호 및 제8호중 "국제화"를 "세계화"로 하고
동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세계무역기구(WTO)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
사항

제3조 제3항중 "총괄반장"을 "담당계장"으로 하고

제7조 제2항중 "위원장이 위촉한다"를 "도지사가 위촉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'95. 3. 27

제안자 윤태한의원외 4인

○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명확하지도 않고 현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로 운영을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
- 정부에서도 예산과 인력절감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행 위원수를 늘리지 않고 각 분야별 전문인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지방의 세계화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것임.

○ 수정 주요골자

- 본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"30인 이내"를 "20인 이내"로 하여 현행대로 함.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구성) 제1항중 "30인 이내"를 "20인 이내"로 한다.